



#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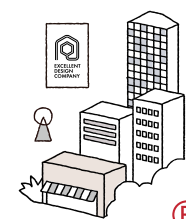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drights.kidp.or.kr](http://drights.kid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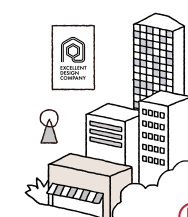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drights.kidp.or.kr

#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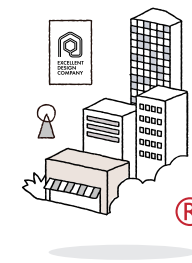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            |    |
|------------|----|
| 디자인법률자문단   | 8  |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10 |
| 디자인공지증명    | 12 |
| 디자인표준계약서   | 14 |
| 디자인저경력관리   | 15 |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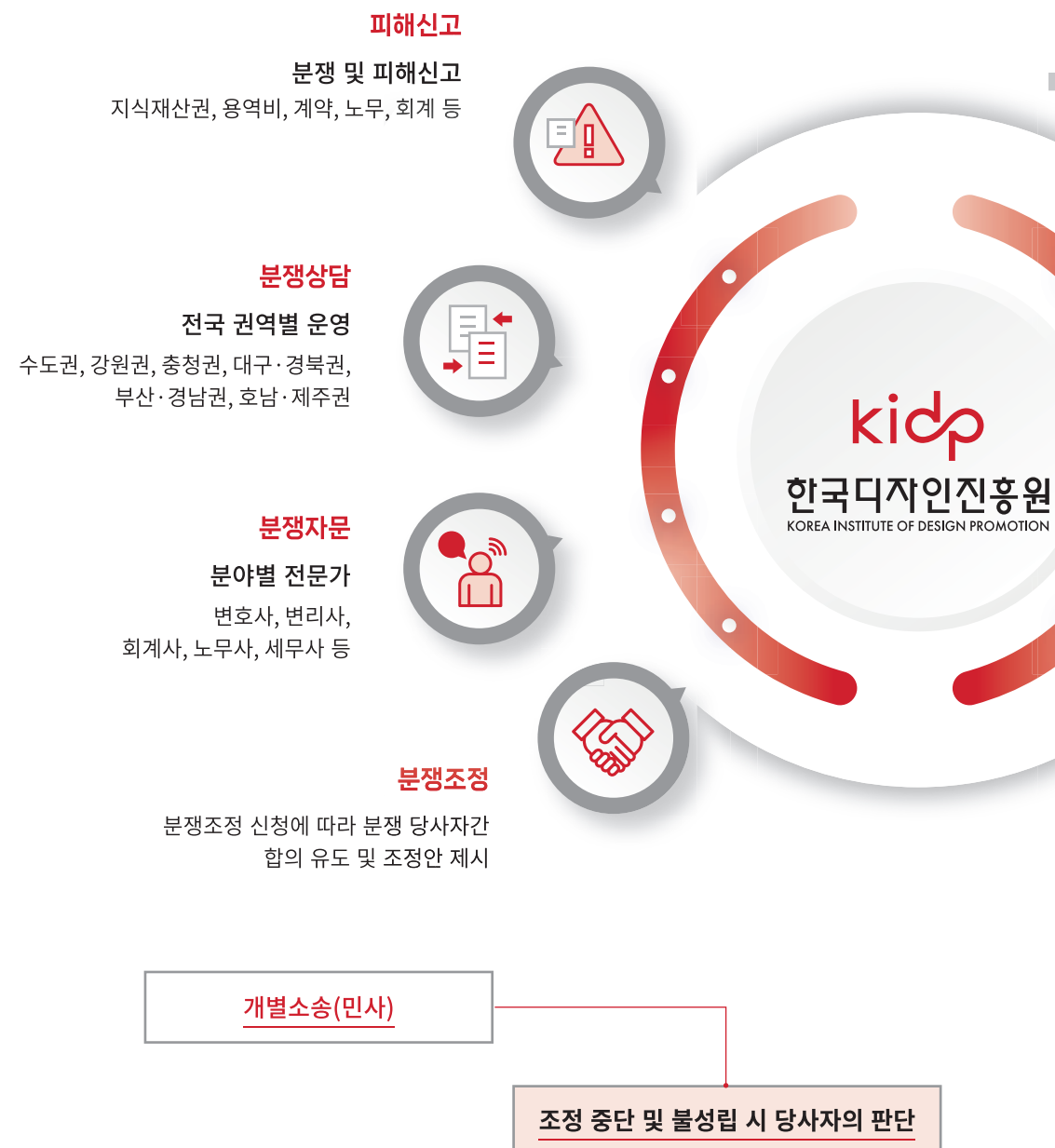
|                 |     |
|-----------------|-----|
| 지식재산권 관련        | 17  |
|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 75  |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97  |
| 노무 및 회계 관련      | 105 |
|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 1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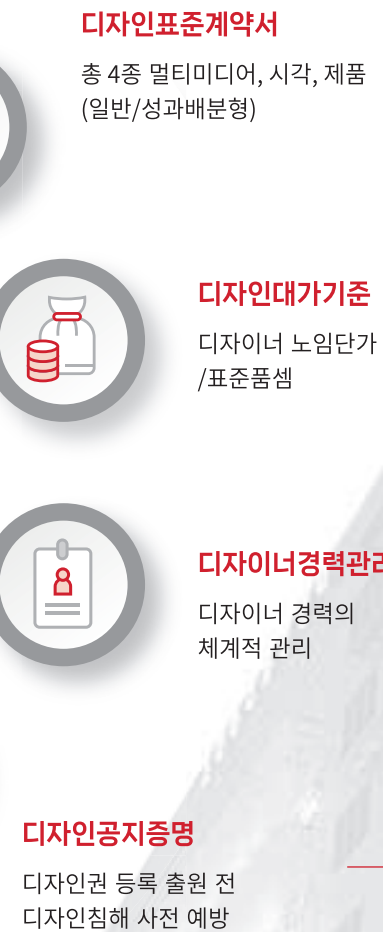
사례 찾아보기



## 디자인 분쟁조정 절차



## 디자인 권리보호



**디자인권 등록(특허청)**  
공지증명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시 심사 결과에 따름

##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kidp

>>>

##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1. 디자인법률자문단
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 디자인공지증명
4. 디자인표준계약서
5. 디자이너경력관리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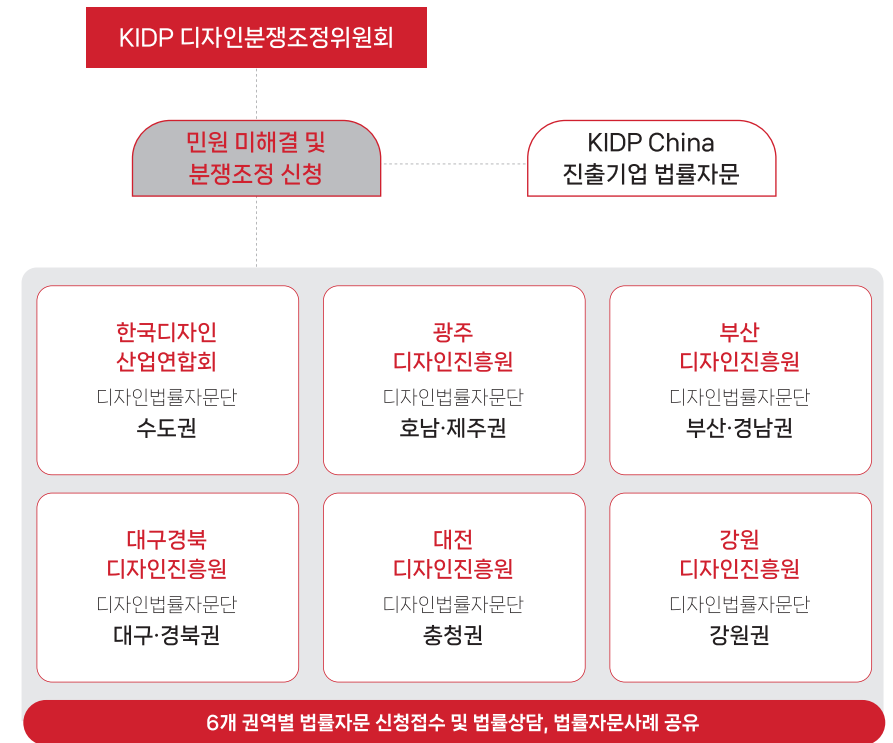
##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합니다.

[https://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https://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운영체계



### 자문절차

- 1. 피해사례 접수**
  - 디자인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 권역별 담당기관
  - 법률상담 신청(신청방법: 웹사이트(drights.kidp.or.kr), 전화, 우편)
- 2. 피해 유형별 DB화 및 상담연결**
  - 접수내용 파악 후 피해 유형별 분류 DB
  - 담당 자문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 연결
- 3. 신청서 검토 및 법률상담 진행 (자문위원 진행)**
  - 신청서 검토
  - 상담 신청인과의 1:1 상담 진행(전화 상담/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 4.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 (자문위원 진행)**
  -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권역별 담당기관에 법률상담카드 제출
- 5. 자문의견 전달**
  - 담당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업계 관련자

#### 지원내용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서비스

#### 신청방법

전화, 우편, 방문접수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수도권) | 1577-4964 | ko-dia@daum.net

광주디자인진흥원(호남·제주권) | 062-611-5053 | pjh4832@gdc.or.kr

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경남권) | 051-790-1038 | law@dcb.or.kr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대구·경북권) | 053-740-0034 | hide@dgdp.or.kr

대전디자인진흥원(충청권) | 042-930-7847 | alsrudgkxm@didp.or.kr

강원디자인진흥원(강원권) | 070-7791-2695 | law@gidp.kr

#### 온라인신청

웹사이트(drights.kidp.or.kr) 내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신청서 접수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drights.kidp.or.kr | 031-780-2232, 2234 | drights@kidp.or.kr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

### 지원내용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 신청방법

웹사이트([drights.kidp.or.kr](https://drights.kidp.or.kr)) 내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및 디자인법률자문단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공동 운영하는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및 권역별 디자인법률자문단 상담 과정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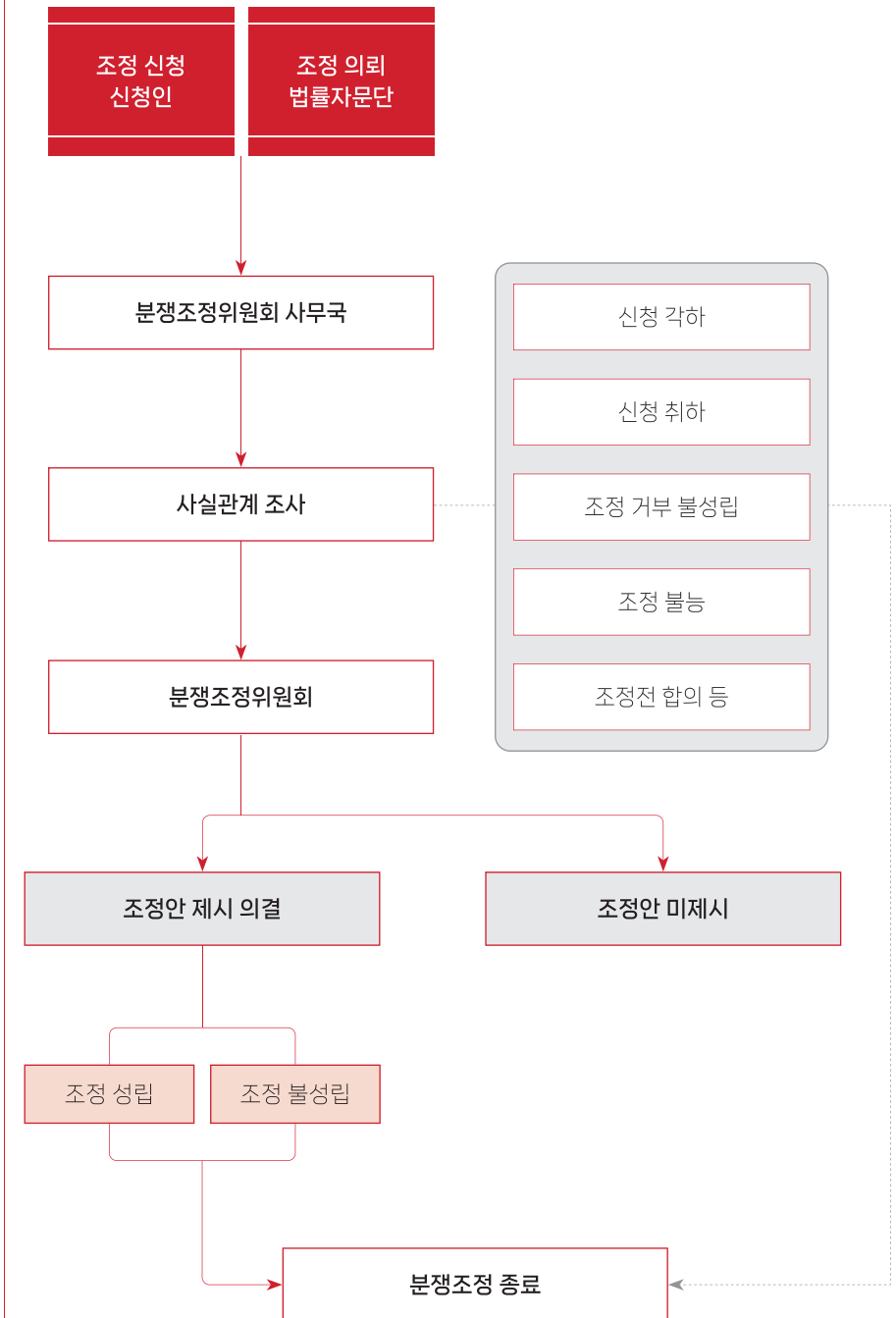
디자인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고 피신청인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함께 송부됨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drights.kidp.or.kr](https://drights.kidp.or.kr) | 031-780-2232, 2234 | [drights@kidp.or.kr](mailto:drights@kidp.or.kr)

### 운영절차





# 03

## 디자인공지증명

[https://drights.kidp.or.kr/sub/standard\\_contract.asp](https://drights.kidp.or.kr/sub/standard_contract.asp)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지증명의 장점

- ① 디자인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 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의 차이점

| 구 분   | 디자인 등록                                                                         | 디자인공지증명                                                    |
|-------|--------------------------------------------------------------------------------|------------------------------------------------------------|
| 목 적   | ·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 · 공지 사실 증명                                                 |
| 처리기간  | · 출원 후 6개월 내외                                                                  | · 짧음(1~3일)                                                 |
| 권리 범위 |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 92조)                                      | · 독점·배타적 권리 없음<br>·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
| 신청 절차 | ·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br>·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br>· 실체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 간단 |
| 비 용   | · 출원비용: 94,000원<br>· 설정등록료(1~3년분): 75,000원<br>· 연차등록료: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 · 20,000원/건 <b>대학생 이하는 무료</b><br>(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
| 보호 기간 | · 존속 기간 20년                                                                    |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                                   |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br>drights.kidp.or.kr   031-780-2232, 2234   drights@kidp.or.k  |                                                            |

### 디자인 공지증명 신청 절차





# 04

## 디자인표준계약서

[https://drights.kidp.or.kr/sub/standard\\_contract.asp](https://drights.kidp.or.kr/sub/standard_contract.asp)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및 성과배분(제품 디자인 관련)와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 중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                                                                                                          |                                                                                                                                 |
|----------------------------------------------------------------------------------------------------------|---------------------------------------------------------------------------------------------------------------------------------|
|  <b>01</b><br>평등한 계약 관계 | <p>'갑'과 '을'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 명시</p>                                                                         |
|  <b>02</b><br>피해예방     | <p>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용역 단계별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p> |
|  <b>03</b><br>계약서 4종  | <p>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성과배분(제품디자인 관련)</p>                                                                                   |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drights.kidp.or.kr | 031-780-2232, 2234 | drights@kidp.or.kr



# 05

## 디자이너경력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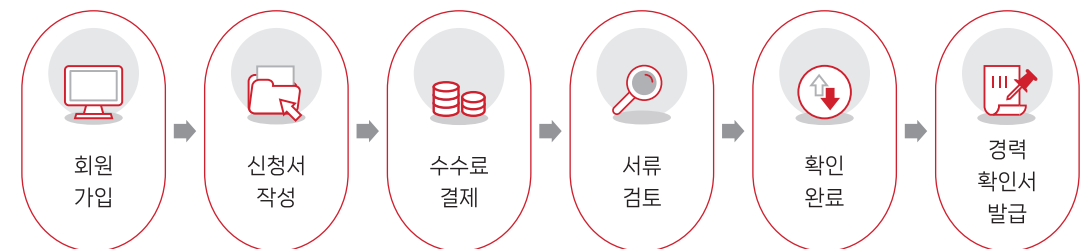
<https://designcareer.kodfa.org/>



디자이너경력관리란 디자이너 개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디자이너경력관리 신청 절차



###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이용 수수료 체계



### 문의처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designcareer.kodfa.org | 02-3445-5198 | dsncareer@hanmail.net

##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

## 지식재산권 관련

#무등록상호 #기존물품가공판매 #포트폴리오 SNS게시  
#지자체계약 #특허 등록 #상표 등록 가능성 #근로계약  
조건 # 디자인 유사성 판단 # 상표권 침해 # 특허·디자인권  
보호 # 디자인권 침해 대응 # 사진도용 #문화재 저작권  
#상표권 등록무효이의신청에 따른 대응 # 유사 브랜드  
상표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여부 문의 # 상표 출원 및 등록  
# 제품 사진의 무단도용 # 저작권침해 #디자인무단사용  
#폰트저작권위반 #디자인출원 #공예상품 디자인출원  
#디자인권보호 #국제디자인출원 #저작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특허제한 #디자인출원 #지식재산권  
#브랜드 상표권 보호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 사용  
#디자인 공모전 #생성형 AI #재직 중 창작물 #디자인 도용  
방지 #미등록 디자인 #2차 가공 디자인 #UX/UI 디자인  
권리보호 #해외 디자인 출원



## 01

지역  
서울

## KEYWORD 무등록상호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요청받고 작업까지 완료하여 상표등록을 요청드렸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후 다른 업체가 제 디자인을 도용하였고, 이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상표등록을 하지 못한 신청인의 로고 디자인 및 현판디자인을 무단 도용하여 바꾸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신청인의 상표등록 거절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보고 도용했음을인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저작권 법의 제2조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여기에 입각해 보면 본건 로고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인정될 수 없고,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모호합니다. 또한, 고객은 침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위 파목)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침해(사용)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즉시 그 중지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경고장, 별첨 참조)을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붙인 스티커에 기재된 날짜에 침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만, 혹시 침해자가 내용증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오해하거나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싫어하여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을 수령한 침해자가 반응하는 내용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기에 내용증명 전송을 추천 드립니다.

## 02

지역  
서울

## KEYWORD 기존물품가공판매

특정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다른 용도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현재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용도로 디자인 출원 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 판매되는 제품을 가공하여 다른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이는 판매 중인 기존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기존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더라도 구입한 물품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권리자 등 정당한 권원을 갖는 자가 상품(물품)을 양도한 경우 상품(물품)에 대한 권리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멸하고, 그로써 권리의 효력은 해당 상품(물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제품을 구입한 다음 별도로 가공이나 수선하여 새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문제가 되나,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가공)하여 새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므로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제품에 대해 아무런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기존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구입한 다음 가공하여 기존 제품명으로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의 상표(또는 상호)가 그대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새 제품명으로 판매한다면 기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 03

지역  
서울

KEYWORD 포트폴리오 SNS게시

국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유사하게 모방한 작품을 SNS나 취업용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저는 국내 디자인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유사하게 모방하여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제가 지닌 모델링과 랜더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SNS나 취업용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만일 신청인께서 타 회사의 인테리어를 포트폴리오로 신청인 본인 SNS에 올리거나 취업용 포트폴리오로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처럼 신청인이 제작한 디자인을 단순히 자신의 이력 및 경력을 알리거나 취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SNS에 해당 포트폴리오를 게시하여 이력이나 경력을 올리는 활동이 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4

지역  
서울

KEYWORD 지자체계약

지자체와 계약 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 해당분야

환경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는 지자체 공공환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입니다.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지자체와 계약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의 계약서에 “과업 수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비록 과업 수행자라 하더라도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후 지자체에서 설계도서를 2차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설계도서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지자체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든 2차 변형하여 사용하든 그것은 지자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자체에 권리가 귀속된 설계도서를 과업 수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사가 위와 같이 그 권리가 지자체에 귀속된 설계도서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과거 귀사가 작업한 현장을 연계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 시, 귀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디자인한 설계도서를 사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는 그 경우에도 미리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당선되지 않은 디자인 작업물을 공모자가 사용한 경우, 그 책임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귀사는 상대방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차목, 필요 부분만 발췌함), 그 행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4

지역  
서울

## KEYWORD 지자체계약

지자체와 계약 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아래 차목(아이디어도용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귀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침해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서비스)을 제조, 유통(수입),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5

지역  
부산

## KEYWORD 특허 등록

진단 계측이 가능한 진공 청소 차량용 보조엔진을 위한 구동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동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당사는 산소발생기를 메인으로 제작하는 업체이며, 이번에 신규로 진단 계측이 가능한 진공 청소 차량용 보조엔진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보조엔진에 사용되는 구동부의 기능을 개선하는 형태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어서 별도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현재 기존의 산소발생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특허출원을 진행한 상태이기는 하나, 신규의 아이템인 진공 청소 차량용 보조엔진에 사용되는 구동부를 좀 더 세밀하게 개발함에 있어서 특허출원을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동부에 대해서 추후 시제품이나 상용화될 경우, 특허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과제 등으로 본 구동부를 개발한다면 정부 과제의 실적의 일환으로서 특허출원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동부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동부에 대한 사시도, 분해도, 단면도 및 사용상태도 등의 도면과 그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특허를 조사하여 R&D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와 'NOOGOONA' 상표를 상표법 거절 사유를 해결하여 등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 ○ 해당분야

기타

#### ○ 사례경과

당사는 사명으로 한글로 '누구나', 영문으로 'NOOGOON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게임, 웹툰, 웹소설, 영상, 굿즈)과 관련된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noogoona.com 도메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내 메일로 noogoona.com을 실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 및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회사 외부 활동도 '누구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에 '누구나' 한글 이름과 'NOOGOONA' 영문 이름의 상표 등록을 접수한 적이 있는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인지 별도의 의견 제출 없이 관련 내용이 거절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귀사는 "누구나" 및 "NOOGOONA"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등록이 거절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NOOGOONA'와 '누구나'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입니다.

상기 두 표현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되며, 이는 상품의 특정 출처를 표시하기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아울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등록된 선행 상표('NUGUNA', '누구나')와의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귀사의 'NOOGOONA'와 '누구나' 상표는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와 발음 및 표기가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사한 지정 상품을 삭제하거나 출원을 분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누구나'와 'NOOGOONA' 상표를 상표법 거절 사유를 해결하여 등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법적 근거 및 식별력에 있어서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누구나"와 같은 표현은 특정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고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누구나" 및 "NOOGOONA" 상표로는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독점적 상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식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결합 상표(로고 등)를 추가하는 방안이나, 브랜드 전략을 수정하여 독창적인 상표를 사용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07

지역  
부산

## KEYWORD 근로계약 조건

주 4일제 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주의 출근일 조정 및 총액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 ○ 해당분야

디지털

## ○ 사례경과

당사는 현재 주4일제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에 대해서만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모두 출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총액임금제 방식으로 발생가능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주 4일제 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주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4일제 근무에서 주중 공휴일이 있어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를 자발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관행에 따른 권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수당 지급 관행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보다 조정된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어 출장 시 근로 시간 인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7.5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 현재 주 4일제를 채택하여 주 1일의 휴일을 더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우대조건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추가 부여가 지속적인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새 근로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시 무기계약을 채택할 경우,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08

지역  
부산

## KEYWORD 디자인 유사성 판단

브랜드 네임으로만 상표권을 확보한 후 심볼과 병기된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시각

## ○ 사례경과

당사는 상표출원 및 등록 시 브랜드 네임이 식별력이 있어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변리사의 의견이 있었으나, 심볼에 대한 부분은 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당사는 심볼과 함께 활용하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브랜드 네임으로만 상표권을 확보하고 심볼과 병기 표기된 디자인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혹시 불가능하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로고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방법에 대한 문의로, 신청 기업은 로고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및 유사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성 판단 기준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화상디자인 정의 및 유사성 판단 : 화상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시각적 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유사성 판단 기준은 형태와 용도, 기능의 동일·유사 여부와 혼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 2) 일반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일반수요자(평균적·이성적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외관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미감을 비교합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요부)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며, 특정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르다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대법원 판례의 동일성 기준 : 양 디자인의 동일성은 일반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동일한 미감을 느끼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동일성보다는 유사성 여부가 실제 소송에서 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며, 물품의 용도와 기능, 형태가 유사할 때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고 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는 특허청 심사 지침서와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물품의 동일성 여부, 요부 결정, 공통점과 상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제3자의 유명 브랜드가 인쇄된 파라솔 원단을 업사이클링하여 가방을 판매 중인 상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냉장고 자석 제품에 "여수XXX"를 상표등록하였는데, 권한 없는 제3자가 여수에서 "여수XXX"가 부착된 냉장고 자석 제품을 판매 중인 경우 이에 대한 권한 행사 방법은 무엇인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타인의 상표가 판매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과 관련하여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상표가 유명 상표라면 상표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적 목적에서 파라솔 원단을 업사이클링하여 가방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가방 제품에 제3자의 브랜드가 상표 등록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방 제품에 제3자의 브랜드가 상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의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라면, 제3자의 유명 브랜드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여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표의 식별력을 저하시키는 상표 가치 희석화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업사이클링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된다면 이를 엄격히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업사이클링의 친환경적 목적을 감안할 때 제3자는 법적제재 조치를 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즉 제조) 뿐만 아니라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양도(즉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 해당 상품의 제조자는 물론, 해당 상품의 판매자를 상대로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사실을 경고하고, 기존의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적 침해를 구성하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제3자가 2020년도에 상표권등록 했는데 상표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당사는 '요트홀릭'이라는 브랜드를 2016년도부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표권 등록이 늦어지다 보니, 그사이 실제 운영도 하지 않는 타인이 요트홀릭이라고 상표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분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류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였는데, 기존 등록된 상표권도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인은 2016년부터 자신의 브랜드 "요트홀릭"을 사용하였지만, 그 당시에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경 제3자가 "요트홀릭"이라는 명칭을 신청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상표 등록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 요트홀릭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제3자의 상표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기존에 누적된 상표 사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위험도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3년간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고 해당 상표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상표 사용 유무가 중요하며, 따라서 사전에 상표 사용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상표권의 무효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상표가 어느 정도의 유명성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단순히 상표출원 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거들이 없다면 해당 상표권이 무효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요트홀릭 브랜드는 상호 상표이므로 상호 상표의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상표 사용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한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먼저 사용된 상호에 대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선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

지역  
부산

## KEYWORD 상표권 침해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제3자가 2020년도에 상표권등록 했는데 상표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표가 제3자의 상표의 설정등록 이전부터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제3자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며, 신청인이 별도로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11

지역  
부산

## KEYWORD 특허·디자인권 보호

개발한 제품의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시중에 당사가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은 없지만, 유사한 디자인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디자인 등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디자인 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가 보유한 특허와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방지 조치가 무엇인지 자문을 드립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해 디자인이나 특허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며(특허법 제97조),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는 독립항과, 다른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넓은 보호범위를 가진 것은 독립항입니다. 따라서 독립항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기술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항을 위주로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신청업체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권에 의해서는 신청업체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이 보호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업체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애초부터 특허로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업체는 특허로서의 등록 가능성과, 이에 의한 보호범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매우 특이한 기술개념이 없다면 디자인 등록으로서 보호받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물론이며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종래에 공지된 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개발한 제품의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각각의 물품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고려할 때 가급적 많은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디자인을 등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며,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등록하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업체가 개발된 제품은 독특한 형태의 물품의 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분디자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업체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은 이미 기 등록된 특허권 등에 의해 공지된 기술이므로, 추가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사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2024년 9월 9일, 당사(프리젠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모음으로부터 경고장을 등기로 접수받았습니다. 해당 경고장은 주식회사 모음이 특허법인 아이스퀘어를 대리인으로 하여 발송한 것으로, 당사가 현재 판매 중인 쪽쪽이(공갈 젓쪽지) 제품이 모음의 등록디자인(등록디자인 제30-1058802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음 측은 당사의 쪽쪽이 디자인이 모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자인권이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 비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협상이나 실시 중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모음은 (주)프리젠티의 '두리 안심 쪽쪽이'가 등록디자인(제30-1058802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침해 물품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형상과 심미감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주)프리젠티의 침해물품이 등록디자인을 실제로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 1) 일반원칙: 디자인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사로 간주합니다. 관찰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육안 비교를 원칙으로 하나 확대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 차이가 있어도 유사로 봅니다.
- 2) 유사 범위 설정: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 범위를 넓게 보고, 기존에 많이 사용된 디자인일수록 유사 범위를 좁게 봅니다.

## 12

지역  
부산

## KEYWORD 디자인권 침해 대응

자사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음으로 침해 판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침해 물품과 디자인권의 유사성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상이나 모양 중 하나라도 유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하며, 전체적인 디자인 미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경고장 대응'이 있겠습니다. 침해 물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경고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침해 물품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요청하여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공지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분석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13

지역  
대구

## KEYWORD 사진도용

경쟁업체에서 신규로 상세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당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당사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카달로그 등 활용될 제품 이미지 촬영을 하였고, 이를 약 1년간 온라인쇼핑몰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최근 기업체가 제품 이미지 중 2컷을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광고용 카달로그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한한 사진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창작성을 부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사진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 기업체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14

지역  
대구

## KEYWORD 문화재 저작권

지역 문화재에도 저작권 같은 것이 있나요? 이미 문화재를 본뜬 디자인이나 제품이 많은데, 이러한 디자인 등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지역 문화재에도 저작권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문화재를 본뜬 디자인이나 제품이 많은 상황인데, 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서, 지방문화재라 할지라도 저작자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방문화재의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경과 되었다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 문화재인 경우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저작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는 등의 사용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재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및 여러 사정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용하는 저작권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15

지역  
대구

## KEYWORD 상표권 등록무효이의신청에 따른 대응

직물지를 출원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직물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나 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에 대한 등록 무효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저는 2024년 1월 11일에 직물지를 출원하여 동년 3월 11일 특허청으로부터 직물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나, 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24년 5월 23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위 디자인등록에 대한 등록 무효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등록 무효 이의 신청에 따르면 직물은 위사와 경사가 모여 직물을 구성하게 되므로 기존의 직물과 차이가 없고, 이의 신청인의 직물의 형태를 도용한 것으로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타사 제품의 형태도 등록디자인의 직물과 유사하므로 역시 창작 용이성에 따른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직물의 구성이 위사와 경사로 구성되는 것은 물품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디자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직물의 디자인 요소는 평면이어서 형상은 큰 의미가 없으나 모양과 색채로 디자인을 판단하게 되며, 이는 원사의 배열과 제조 과정의 열처리 및 공정의 특수성에 따라 직물 제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 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6

지역  
대구

## KEYWORD 유사 브랜드 상표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여부 문의

당사는 현재 판촉물 쇼핑물과 장류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및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품목에 관해 '오름기프트'라는 브랜드로 로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해 궁금합니다.

1. 지식재산권에 심사를 받아야 지식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2. 인터넷 검색 시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판매하면 표절 시비가 붙을 수 있나요?
3. 브랜드 로고의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거나 이름이 비슷하게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당사는 현재 판촉물 쇼핑물과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기타)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및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품목에 관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오름기프트"로 하여 로고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 지식재산권에 심사를 받아야 지식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 2) 오름기프트로 인터넷 검색 시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해당 이름으로 판매하면 표절 시비가 붙을 수 있나요?
- 3) 브랜드 로고의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거나 이름이 비슷하게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 ○ 자문의견

1번 사항을 답변드리면, 상표권 취득을 위해서는 상표출원 대상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후 일정 기간동안 특허청 담당 심사관의 법률해석에 따라 등록 가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번 사항의 경우, 타인이 '오름기프트'라는 상표로 판촉물 도소매 등의 업종에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상표의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1번과 같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3번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로 사용하는 표장이 타인의 로고(도형) 또는 문자와 동일 유사할 경우, 상표 선등록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모방 상표 사용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7

지역  
대구

## KEYWORD 상표 출원 및 등록

당사는 시각 전문 디자인 기업으로, 현재 보유 중인 회사 브랜드명 상표등록(제40-1656699호) 외 추가로 필요한 지정 상품, 현재 개발 중인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 및 상표의 해외 출원 등에 대한 자문을 드립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당사는 시각 전문 디자인 기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브랜드명(국문: 그레이 주스/영문: grayjuic)의 상표등록과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제35류 지정 상품으로 등록하였으나 변리사 도움 없이 자가 등록하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개업 초기 출원할 당시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온라인 판매만을 고려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현재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고,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에 상표출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받고 지정 상품 등 보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상표의 상표출원을 일반심사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7월 26일자로 상표등록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출원번호는 제40-2024-013706호 상품분류 42류 그래픽 디자인업,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업, 그래픽아트 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삽화 디자인업, 상업디자인서비스업,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상담업, 애니메이션 디자인업 포함한 12개 지정 상품입니다.

당사는 현재 버섯 및 기타 시설작물 재배 및 작물 재배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고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내 상표등록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당사는 현재 버섯 및 기타 시설작물 재배 및 작물 재배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로고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 아래 도안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에 국내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 및 상표출원,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상표의 상표출원을 일반심사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7월 15일자로 상표등록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출원번호는 40-2024-0129821호 상품분류 44류 농작물 재배업, 스마트팜 농장운영업 외 7개 지정 상품입니다.

당사는 '왕만 양꼬치'라는 명칭으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사 명칭의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상기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당사는 '왕만 양꼬치'라는 명칭으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사 명칭의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상기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상표출원과 등록 절차 등 전반적인 컨설팅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왕만 양꼬치

#### ○ 자문의견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상표의 상표출원을 일반심사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7월 3일자로 상표등록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출원번호는 40-2024-0121636호 상품분류 43류 마라탕 전문 식당업 외 9개 지정 상품입니다.

현재 판촉물 쇼핑물과 장류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및 도소매 사업중으로 해당 회사의 네이밍으로 상표권 확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국내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와 상품 판매와 관련된 지정 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현재 당사는 판촉물 쇼핑물과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가공 식품 온라인 판매 및 도소매 사업 중으로 해당 회사의 네이밍으로 상표권 확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호의 상표권 확보를 아래 도안 이미지를 기반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와 상품 판매와 관련된 지정 상품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상표의 상표출원을 일반심사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7월 3일 자로 상표등록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출원번호는 40-2024-0121637호 상품분류 35류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판촉대행업 외 13개 지정 상품입니다.

경쟁업체에서 당사의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 상세페이지에 등록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현재 경쟁업체에서 당사의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 상세페이지에 등록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유선 상담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신청회사에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 세계 랜드마크 '아트웍' 저작권 침해 여부

## ○ 해당분야

저작권

## ○ 사례경과

현재 저작권 침해 혐의로 3인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창작한 세계 랜드마크 관련 창작물을 유사하게 모방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며, 저작권상 침해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세계 랜드마크를 재해석한 아트웍(창작 도안)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라고 보입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므로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또한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창작 도안의 경우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업체의 무단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 도안은 미술저작물로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 회사가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할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고 되고,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라면 복제라고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설프게 수정해도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최종 침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작년 체결한 홍보물 제작 계약에 의해 제공한 홍보물 디자인을 올해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조치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홍보물디자인, 저작권침해

## ○ 사례경과

당사는 2023년 3월 00와 '2023 ☆☆ 통합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메인디자인을 개발, 포스터와 브로슈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 ☆☆' 홍보물이 당사에서 2023년도에 개발한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게, 일부 텍스트만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메인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당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디자인을 사용한 ○○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물품 계약서상에 IP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포스터 제작에 관하여 제작 의뢰자가 깊숙하게 관여한 것이 아닌 이상 최초 디자인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또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창작자인지의 여부, 창작일자, 최초 공표일, 침해 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면 저작권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나라장터 물품 계약을 통해 의뢰를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약 특성상 존재하는 IP나 저작권 관련 조항이 별도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상세히 검토한 후에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24

지역  
광주

## KEYWORD 폰트저작권위반

자체 제작한 e-book에 사용된 ▲▲폰트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위반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저작권, 폰트, e-book

## ○ 사례경과

본 센터에서 2024년 제작한 ○○보고서에 사용된 ▲▲폰트와 관련하여 e-book(pdf) 웹 게시에 따른 저작권 위반 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관계 및 대응 방안에 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확인 결과, 센터가 사용한 폰트는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해당 프로그램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경우로서 저작권 위반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의 사용 정도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이로부터 폰트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폰트 사용권에 대한 권리 또는 기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개념의 비용이 아닌 사용권 또는 사용 내역을 모두 삭제 하는 방식으로의 협의를 추천드립니다.

## 25

지역  
광주

## KEYWORD 상표권침해

\*\*\*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그 상품명과 '100% 정품'이라는 표시를 하였는데,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저작권, 상표권, 손해배상금청구, 내용증명

## ○ 사례경과

저는 \*\*\*의 초보 셀러로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상품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7월 △△회사가 수입한 법무법인으로 "상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의 건"이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측은 ○○상품 관련 '상표로서의 사용'과 '100% 정품, 모든 제품은 정품이며 가품일 시 200%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상세 페이지 내 상단 문구를 쓴 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3,300천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상품의 상표 이용 중지, 판매 중지 요청을 수용하여 40여 개의 스마트 스토어 전체 제품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의 고의성 역시 없었으며, 판매 이력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표법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 답신 방향성 및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상대방의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실제 신청인의 행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신청인은 즉시 상표 이용 중지와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마쳤으며, 해당 상품의 판매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3,300천 원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자신의 상표가 인터넷에 언급된 판매자들을 상대로 확실적인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추측되므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의 연락이 다시 온다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로 상대방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신으로 신청인이 발송할 내용증명 우편의 초안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신청인께서 적절히 추가, 수정 및 삭제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26

지역  
광주

KEYWORD 디자인출원

디자인회사가 고객이 의뢰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자체 출원 할 수 있나요?

### ○ 해당분야

저작권, 디자인출원

## ○ 사례경과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디자인 회사 내 자체 대리 출원 시, 변리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이 가능한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우선, 변리사법에 따르면 비변리사가 특허청에 대해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회사 및 그 구성원이 변리사가 아닌 경우 고객을 “대리” 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변리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등록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변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때 그 디자인을 실제로 창작한 자로서 대가 관계없이 출원 절차 또는 관련 서류 작성에 조언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진행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EYWORD 공예상품 디자인출원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 방안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저작권, 디자인출원, 공예상품

## ○ 사례경과

자사가 자체 개발한 공예상품 디자인 등록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기업이 개발한 제품(도어벨 및 액자)이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와 관련되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울러 도어벨(장식용 문종) 및 액자의 디자인 출원 시에 요구되는 도면 등의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허청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진행할 때는 키프리스를 통해 선행디자인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이 있으며, 디자인등록의 출원, 심사 및 등록 절차와 시기, 특허청의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가구 등 디자인 개발에 따른 디자인권 및 상표권 권리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공모전 수상작, 디자인권, 저작권

#### ○ 사례경과

자사는 조립식 가구, 캔들, 비누, 인형 등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다리 컨셉으로 조립식 가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굿디자인에 신청하여 곧 2차 평가가 진행되는데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범위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조립식 가구는 기존에 굿디자인상을 수상하였고,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나, 관련 제품의 창작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상과 기술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특허출원 등록을 하지 않아 IP보호 전략 미흡으로 시장에서 유사 제품 출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 제품인 '조립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숙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도 디자인 출원만으로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는 창작 내용과 안전 결합시스템 등 기술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특허출원 등록을 하여 권리 범위를 폭넓게 보호받아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의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대표 제품만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나머지 제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과 저작물 등록 창작일자 표시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립식 가구 등의 특허권, 디자인권 받은 후 일부 기술이전을 하는 방법, 기술로 산정 방법, 기술이전 활용 사례 등에 대해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제품 개발 건에 대한 특허출원과 디자인 출원 및 전략적 활용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디자인권, 저작권

#### ○ 사례경과

당사는 리서치를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품 양산 및 시장 출시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품 형태나 사용법 등은 시장에서 새로운 신규성이 있으나 제품 구조나 제작 방식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이 경우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등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밀볼 장치의 경우 기능성을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부분이 있다면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밀볼 장치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볼 장치의 경우 기존에 있던 제품과 다른 디자인을 띠고 있다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한 후 등록을 받아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밀볼 장치는 특허(실용신안)나 디자인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 비용이 저렴한 반면, 등록 가능성은 높고,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권리 보호의 폭은 크지만 출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디자인에 비해 등록률이 다소 떨어지므로,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 출원을 병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30

지역  
광주

KEYWORD 공예상품 디자인출원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저작권, 디자인출원, 공예상품

## ○ 사례경과

자사가 준비 중인 도자기 제품디자인에 관한 지적재산권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진행 절차 등에 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도자기 제품을 직접 제작할 경우, 외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자인 출원을 위한 출원인코드 발급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정보와 서류에 대해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병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검색한 결과, 주병의 하부면 형상에서 꽃무늬 모양에 있어 다양한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심미성이 존재하므로 창작성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디자인의 핵심은 주병에 있어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입구가 좁아지는 형상과 하부면에 형성된 꽃무늬 형상을 디자인의 핵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품류 제7류에 대해 일반심사 품목으로 디자인 출원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인생략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일자 2024.09.20  
특기사항 공개신청(무)  
출원번호 30-2024-0037766 (출원번호 1-1-2024-1026034-49)  
(DAS집금코드8236)  
출원인성명 김현아(4-2024-065034-0)  
대리인성명 김행민(9-2020-000424-2)

특 허 청 장

## 31

지역  
광주

KEYWORD 국제디자인출원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국외 디자인 방어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디자인출원, 국외디자인방어, 헤이그 협약

## ○ 사례경과

자사는 공기 청정기능과 살균 기능을 함께하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공기살균 시 사용되는 빛을 조명으로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spacemona로 상표등록과 디자인권 2종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외(중국, 인도 등) 디자인 방어 방법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디자인권은 디자인 출원을 통해 등록되어야지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저작권과 달리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출원을 한 국가에서만 권리가 보호된다는 원칙으로 국내에만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해외에서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직접 디자인 출원을 하거나 헤이그 협약 등 국제 조약에 기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헤이그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헤이그 절차를 통한 출원은 불가함으로 직접 출원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디자인 방어 방법은 디자인등록을 받는다고 디자인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의 경우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투입되는 해외 변호사 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분쟁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32

지역  
대전

## KEYWORD 저작권

대전지역의 주요 건축물을 활용한 굿즈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까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디자인 개발 후 판매할 제품이 지역의 상징적 건물(한빛탑, 엑스포다리, 대전역사, 천주교 대흥동 교회, 대전예술의전당, 목척교, 장태산 출렁다리, 스카리 로드)의 외형을 라인드로잉을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물 형태 등의 사용에 있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건축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이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문의하신 건축물들에 저작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건축물들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있다면, 여러 관련 권리(복제권 등)들이 저작권 안에 포함되는데,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형 라인드로잉은 복제권이 아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형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 또는 패러디하거나 캐리커처처럼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권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써 이는 저작권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허락을 득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습니다.

## 33

지역  
대전

## KEYWORD 상표권

제품 홍보 과정에서 동일한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을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소명하여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현재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 중 '베이피코편한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코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홍보해 오던 중 특허청에 '코뱅'이라는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있다고 하여 해당 단어를 수정하였으나, 모델명 등 침해의 사유가 남아있다고 하여 판매하던 페이지를 삭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홍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고 소명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울러 자사 브랜드명 외 제품명들도 모두 상표권으로 등록해 놓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상표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데, 귀사의 경우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④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에서의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표장(문자나 로고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전에 제품명이나 브랜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되어 있는지를 키프리스 등에서 검색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표장의 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유사한지를 보는 것으로서, 지정 상품의 유사성은 선등록 상표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유사군(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 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 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 특허청 '유사 상품 심사 기준' 참고)에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4

지역  
대전

KEYWORD 지식재산권

제품디자인 개발 확정안에 대한 출원 가능성 등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요청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는 2024년 지역 특화 유망 기술 활용 양산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종합디자인기업입니다. 본 기업의 제품디자인 개발 확정안에 대한 출원 가능성 등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본 건 개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침수 감지 센서는 계측 기구, 검사기구, 신호 기구 등이 속하는 제 10류(시계, 휴대용 시계, 그 밖의 계측 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 기구)의 05군(검사, 안전 또는 시험을 위한 도구, 기구 및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0류에서 이 건 개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 또는 형상의 선행 디자인이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0류에서 이 건 개발 디자인은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건 개발 디자인은 디자인공보 등의 선행 디자인 대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종업계에서 정보 제공 등으로 유사 디자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5

지역  
대전

KEYWORD 상표권

미국 바이어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등록을 미국에서 진행하였을 경우, 별도의 지급 없이 상표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나요?

## ○ 해당분야

기타(상표권)

## ○ 사례경과

당사는 2019년 미국 바이어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미국 바이어가 진행하고, 수출 진행이 안 될 시에 상표권은 자사로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 관련 내용은 총판 계약과 별도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며, 계약서 원본은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스캔문서는 PC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하여 소실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수출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동안 미국 바이어사 대표 및 계약 담당자의 퇴사로 인하여 새로운 인원들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바이어측에서는 상표권 양도를 위해 미화 3만 달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 3만 달러의 지급 없이 상표권을 다시 양도받기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 2) 미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 기간과 상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자문의견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상표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상표권 불사용에 따라 취소된 다음 재출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등록 후 매 5~6년에 미국 내 상표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취소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수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상표 사용 실적은 없다고 판단되며, 바이어가 상표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 내지 2026년까지 기다렸다가 바이어의 상표가 소멸된 다음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셔서 상표등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는 다행히 국내 상표가 2015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미국 바이어에게 국내에 등록된 우리 상표의 도안을 표절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므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표 유지 비용은 대략 관납료로 525불이 소요(10년간 유지비)되며, 이외 대리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36

지역  
대전

## KEYWORD 특허제한

디자인 개발이 기업의 특허권 행사에 제약이 되나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는 체외 충격파와 고주파를 활용한 셀룰라이트 관리시스템의 세부 요소로 핸드건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권 행사에 제약이 없는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핸드건의 구성요소 중에서 내부에 구비되는 부분은 외형 중심의 디자인 개발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디자인 개발에서는 핸드건 내부 구조를 먼저 살펴본 이력이 있어 이 부분에서 양호하게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또한, “특허 기술이 적용된 체외 충격파 발생장치의 내부 기본구조를 참조하여 디자인 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고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도출된 시안 9개가 모두 특허의 구성요소를 내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내부 구성요소 배치의 용이성과 제작의 용이성 및 사용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적절히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9개의 디자인 시안은 손잡이와 모드 선택 버튼의 위치 관계 등에서 큰 선호의 차이가 없어 보이나, 손잡이의 모양과 바디부의 이루는 각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울러 디자인 개발 중간보고서를 볼 때, 일반적인 디자인 개발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평가 의견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37

지역  
대전

## KEYWORD 디자인출원

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품개발 중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의 디자인 출원 가능 여부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개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개발 상품 중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4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일단 ‘꿈돌이’와 ‘꿈순이’라는 단어는 대전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에 있는 상표들이므로 출처의 오인 혼동으로 인해 출원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꿈돌이 등의 캐릭터는 널리 알려진 캐릭터이므로 이를 주된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캐릭터들이 단순히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사용된다고 심사관이 판단한다면 등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매우 어려운데, 현재 상태로 출원하는 입욕제 포장디자인은 등록 거절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출원할 수 있는 출원 방법은 1)꿈돌이와 꿈순이를 삭제하고 2) 캐릭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디자인 특허출원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을 자회사의 다른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자회사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자회사의 다른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동일시하여 여러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런데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한 개의 디자인마다 한 개의 디자인 등록출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특정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피카츄 로고가 있는 지갑을 디자인 등록한 경우 그 지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갑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피카츄 로고가 없는 컵, 마우스패드 등 물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의를 사항은 귀사의 다른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활용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위 예와 같이 다른 제품에 특정 로고를 쓸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권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디자인권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실시 대상 물건의 디자인이 다른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는 내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실시 대상 물건의 디자인이 다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다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활용을 다른 의미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자인권은 1디자인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특허출원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을 자회사의 다른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요약하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물건에 등록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다른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침해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발된 디자인 시안에 대한 디자인 출원 가능성 검토 요청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연구장비)

## ○ 사례경과

아래 사진은 디자인 전개를 통해 선정된 최종 디자인 시안으로 디자인출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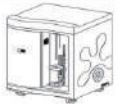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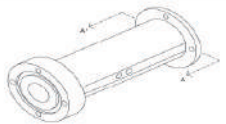


## ○ 자문의견

출원인의 디자인은 알루미늄 용융 금속 품질 관리를 위한 용존 수소 측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 측정 장치의 외부 형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있던 디자인이 아닌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출원인의 디자인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등록/출원번호                 | 디자인명칭                  | 대표도면                                                                                 |
|---|-------------------------|------------------------|--------------------------------------------------------------------------------------|
| 1 | 30-2006-0033117<br>(소멸) | 기체 흡착 측정 장치            |  |
| 2 | 30-1170086<br>(등록)      | 굴뚝 미세 먼지 농도 측정장치용 측정부재 |  |

결론적으로 선등록 디자인과 출원인의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출원인의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비 창업한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출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현재 예비 창업한 OOOO라는 브랜드를 통해 펫용품 시제품을 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일본 박람회 참여 및 글로벌 판매 계획도 있는데,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어떤 지식재산권을 진행해야 하는가?
- PCT 출원 또는 해외 특정 국가에 출원 가능 여부?
- 디자인 경연 대회 신청에 의한 공지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에 문제는 없는가?

## ○ 자문의견

먼저, 제작 중인 시제품과 관련하여 제품에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외관에 심미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식별을 위한 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생각해야 하며, 상기 권리들은 보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면적 고려가 필요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디자인에 특징이 있다고 해서 디자인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은 관점을 고려하여 지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일본 박람회 참여 및 글로벌 판매 계획과 관련하여 해외 출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해외 출원의 경우 국내 출원 이후에 해외 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 후에 해외 출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출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특허(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 후 1년, 디자인은 국내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외 출원일을 국내 출원일로 소급시켜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국내 출원만을 진행하고, 9월 박람회 참여에 관계 없이 1년 이내에만 해외 출원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특허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해외국가 출원일이 18개월 연장되기 때문에 사업 상황에 따라 PCT 출원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내외 상표 보호 조치 및 취약점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국내외 상표 등록 이후에도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나 전략은 무엇이 있으며, 상표 모니터링 또는 특허권 및 디자인권 등록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일단 상표가 '등록'이 되면 그 국가에서 정당하게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며,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만 받았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그 국가 내에서 상표 및 상품(서비스)을 사용하여 불사용 취소를 당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사용 취소'란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을 시, 불사용 기간이 소정의 기간을 만족할 경우 취소심판이 제기될 수 있고, 그 등록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등록을 받았다면 가급적 그 국가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삼자의 동일 또는 유사 사용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장 내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해당 국가 내 시장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사용을 잡아내고 경고장을 보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문의하신 사항은 '브랜드'에 관한 것으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 외에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여 그 국가 내에서 상당히 알려지는 경우라면 조금 더 보호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진다는 것은 해당 국가 내에서의 매출, 광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디자인이나 특허의 경우 브랜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고, 디자인의 경우 귀사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의 외관(appearance)을 보호하는 것이고, 특허는 귀사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므로 서로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름이나 외관이 달라도 기술을 따라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특허를 진행하셔야 하고, 유형의 제품 외관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면 디자인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사용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라이노,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등 디자인 프로그램을 크랙으로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수상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크랙으로 불법 다운로드하여 라이노나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등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불법적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이 존재
- 2) 불법 복제임을 알고 취득
- 3) 불법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공모전 등 출품하여 수상을 하는 경우,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개별 금지 조항으로 명시한 경우나 해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3

지역  
강원

## KEYWORD 디자인 공모전

전공 수업 결과물을 공모전에 출품 시, 권리 귀속 및 권리보호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일반적으로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경우, 전공 수업 결과물을 공모전에 출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에 관해 자문드립니다.

1. 공모전에서 수상했을 경우,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2.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한 경우, 외부에 노출된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자문의견

먼저, 공모전 수상 시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 출품, 수상작에 대해서는 저작자와 공모전 주관기관(기획사 등) 간 계약에 의해 권리 귀속 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공고 당시 공모전 주관기관에서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정함이 있고, 이를 공모전 참가자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공모전 주관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전에 따라 주관기관 등에 귀속되거나 또는 출품자에 권리 귀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고 양도나 상속 등 권리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한 경우, 노출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자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공모전의 기준에 따라 출품자에 권리가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일(공모전 출품으로 공개됨)로부터 1년 이내라면 디자인, 특허 등으로 출원하고 공지 예외를 주장하여 지재권을 확보하거나 지재권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44

지역  
강원

## KEYWORD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할 경우, 디자인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포스터 등 디자인 결과물을 만든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생성형 AI를 통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보호에 대하여, 글로벌 국가 대부분의 경우 AI에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AI를 통한 결과물을 만든 자연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연인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창작기여도)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개별의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전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입장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단지 AI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성된 산출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개된 종래 저작물을 AI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AI학습데이터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AI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처, 이용 내역의 공개, 저작권자 보상 체계 마련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IPP(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근무 중인 회사에서 참여한 작업물의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현재 IPP(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여 학기 중에 OO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온전히 제가 만든 창작물(홍보영상) 등의 작업물과 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만든 UI 디자인 결과물의 경우, 추후 개인 포트폴리오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것을 참고 자료로 써도 되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 작업한 '기획 창작물' 및 팀원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만든 'UI 디자인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 제2조 제31호(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만약 문의하신 내용의 작업을 하는 과정이 회사의 기획하에(=회사로부터 지시에 의하여 만들거나, 또는 기획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서 이루어 지거나, 그러한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회사 내 직책 또는 보직, 맡은 업무가 이러한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기획물을 만들도록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권리를 갖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게임 제작 회사에서 게임 내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 디자인 업무를 맡은 자가 창작한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 디자인은, 비록 그 업무를 맡은 자가 비록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 디자인, 및 이에 따른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즉, 창작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은 해당 창작물을 타사 이직 시 자신의 커리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설명하기 위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타사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레퍼런스 삼아 작업할 시에는 기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등 개인 작업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도용 방지 방안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디자이너로서 개인 작업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도용 방지를 위한 디자인등록 방법 및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디자인의 경우 모방과 도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제출이나 공모전 등을 통해 디자인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라벨, 인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구 등)이 있어야 하며, 일반 미술품 관련 디자인이나 물품에 적용되지 않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도면(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이 필요하며, CAD도면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D도면이나 사진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출원(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후 일정 기간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원 일자가 공개 일자보다 빨라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잘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designmap.or.kr>>

## 47

지역  
강원

## KEYWORD 미등록 디자인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한가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저의 경우 2021년 제작한 작품을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작품을 통해 2023년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유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을 2022년에 등록한 사람이 소송을 걸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작품을 제작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2021년에 디자인을 제작한 사람을 A로, 2022년에 디자인을 등록하고 소송을 건 사람을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A가 디자인을 먼저 제작하였으므로 A에게는 선사용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선사용권이란 타인의 디자인 출원일 이전부터 디자인을 사용한 사람에게 무상의 실시권(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사용권 발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 1) A가 디자인을 제작한 날짜가, B가 디자인을 출원한 날짜보다 빨라야 하고,
- 2) A가 창작한 디자인을 통해 B의 출원일 이전부터 사업 준비 또는 사업(이윤 창출 행위)을 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A가 디자인을 창작만 했을 뿐 별다른 사업 준비나 실시를 하지 않았다면 선사용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사용권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A가 2021년에 디자인을 창작하고 'B의 출원일 이전'에 A 또는 제삼자가 해당 디자인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B의 디자인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이 무효될 경우 디자인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A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공개하는 행위라 함은, 디자인을 전시하였거나 SNS등의 온라인이 공개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놓여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출원과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저작권의 경우 창작 즉시 권리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이 진정한 저작자인지 여부를 추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을 등록받습니다.

물론,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을 통해 사전에 보호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디자인을 등록받지 않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본인이 창작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SNS 등의 온라인 게시물이나 창작 관련 사진이나 창작과정을 기록해 둔 증빙자료 등)를 사전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48

지역  
강원

## KEYWORD 2차 가공 디자인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2차 가공물에 대한 디자인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지역 캐릭터(강원특별자치도 강원이, 특별이)를 활용하여 일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2차 가공물에 대한 디자인 권리보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저작권법상 원저작물(강원이, 특별이)을 변형하거나 각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동일하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제삼자의 무단 실시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역시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디자인은 원저작물인 강원이, 특별이에 대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저작권법상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2차적 저작물에도 독립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의 UX/UI에 대한 디자인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해당분야

UX/UI 디자인

#### ○ 사례경과

모바일 앱의 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때는 어떤 요소를 클릭하나에 따라 화면 전환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모바일 앱 UI에 대한 디자인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자문의견

UI나 UX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화상디자인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은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하며, 기능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권을 보호받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앱 내에 구현되는 디자인 모양 자체(캐릭터, 이모티콘, 레이아웃 등)
- 2) 앱 내에서 버튼 클릭이나 스크롤, 슬라이드 등에 따라 변화되는 디자인의 동작 변화(화면 전환이나 레이아웃의 전환, 사용자의 동작에 따른 디자인 변화 등)

그러므로 UI 및 UX의 앱이나 소프트웨어의 화면 전환 등에 대한 동적 화상디자인 등은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해외(중국, 일본)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자사에서 디자인한 제품의 중국, 일본 등 해외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제품디자인의 경우 만약 국내 출원을 하였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이나 일본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 출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해외 출원도 가능합니다.

중국은 디자인과 실용신안이 일부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률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넓은 권리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가장 유사하며, 심사 기간도 10-12개월로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역시 부분디자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일본 모두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경우라면, 국내 출원과 동일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점선과 실선을 변경하여 권리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단순변심 계약파기 #일방적 계약중단 #내용증명반환  
#지식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침해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실적인정 #용역계약 #디자인 용역계약  
#디자인 계약 #용역비 미지급 #손해배상금액기준  
#디자인비 지급여부 #용역대금 청구가부 #대금  
청구 및 지급명령 #용역비 지연에 따른 해결방안 문의  
#디자인용역비



## 01

지역  
서울

## KEYWORD 단순변심 계약파기

용역계약 체결 이후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 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해당분야

기타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는 일러스트 제작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해 왔고, 연장 계약 체결 후 용역비 전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이에 고객사는 제작이 취소되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고객사의 단순 변심이나 계획 변경만으로 계약 파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 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계약 해지(해제)의 정당성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계약에 따르면,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귀사의 잘못(귀책 사유)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귀사의 잘못(귀책 사유)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를 이유로 귀사가 오히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상, 계약의 유지는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해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로 인한 귀사의 손해배상 확정 및 그 청구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사가 고객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약정 용역비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순이익)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용역을 수행하는데 50만 원이 소요될 것이었다면, 약정용역비 380만 원에서 50만 원을 공제한 330만 원이 귀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귀사와 고객사 사이의 본건 계약 체결 사실,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 귀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객사의 사정(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사실, 그로 인하여 귀사가 입은 손해액,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그래도 고객사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해결법은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귀사는 이미 용역비를 모두 수령하였고, 그 반환이 문제일 뿐이므로 굳이 귀사가 먼저 소를 제기한다면 위와 같이 5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초과한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굳이 귀사가 먼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용역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02

지역  
서울

## KEYWORD 일방적 계약중단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고객사는 현재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이번 달 월정액을 입금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당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조항은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계약 해지(해제)의 정당성 여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귀사의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사의 용역 대금 미지급(계약위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귀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가 고객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약정 용역비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순이익)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잔여기간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50만 원이 소요될 것이었다면, 잔여기간의 용역비 총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귀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귀사와 고객사 사이의 본건 계약 체결 사실,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 귀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객사의 사정(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사실, 그로 인하여 귀사가 입은 손해액,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그래도 고객사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입니다. 조정이 성립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귀사는 법원에 고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에 기하여 고객사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의 제기는 본건 계약서에 '피청구인', 즉 고객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굳이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03

지역  
서울

## KEYWORD 내용증명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 ○ 해당분야

기타디자인

## ○ 사례경과

저희 업체는 상대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후속 경고서를 다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 드립니다.

## ○ 자문의견

보통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귀사는 이미 담당자에게 보냈으므로 이제는 업체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붙인 스티커에 기재된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만, 혹시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오해하거나 귀사의 강력한 의지를 접하고 법적 절차로까지 가는 것을 싫어하여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반응하는 내용은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업체가 조정절차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해결법은 소송 제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소의 제기는 귀사 또는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굳이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소송에서는 귀사의 청구원인 즉, 귀사와 상대 업체의 합의 내용, 귀사가 용역을 완료하여 최종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사실, 이를 정부 과제 제안에 제출한 사실, 용역 대금의 수액 등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소장 접수 시 첨부할 증거로는 회의록,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시안, 결과물,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04

지역  
부산

## KEYWORD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보호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 이미지 도용 문제 대응,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디지털

## ○ 사례경과

주식회사 슈잉은 최근 개발한 SNS 기반 핫플레이스 추천 서비스 '슈잉'의 디자인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발생한 이미지 도용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파트너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용역비 계약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회사의 CI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창작된 도안(캐릭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표란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슈잉이라는 CI는 상표권등록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절하며 상표권은 '출원주의'이므로 근시일 내에 출원해 보호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 디자인 의뢰자가 계약금 등의 입금 전에 시안을 요청하여 시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뢰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디자인 시안을 보내셔야 합니다.

## 05

지역  
부산

## KEYWORD 지적재산권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계약 위반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드림이노베이션이라는 업체는 과거에 지오소나에서 GEOSONAR-S2 모델의 수상 드론을 구매하여 국책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드림이노베이션은 지오소나의 제품을 하얀색으로 도색하여 본인들이 개발하였다고 속이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구매계약서의 소유권 취득 범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물품계약의 경우 매매로 구매자가 그로 인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그 단품의 소유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구매한 물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물건을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는 설계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수상 드론의 디자인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발명하지 않은 물건을 마치 발명한 것처럼 발표한 경우의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언급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에는 각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서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으며, 만약 자신이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아님에도 권리자인 것처럼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되어 권리자는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06

지역  
대구

## KEYWORD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실적인정

자사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기업에서 법인사업자 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입찰 수요기관에서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한 법인전환 후 용역, 물품구매 실적인정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양도기업과 양수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로 판단하여 실적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용역비, 계약

## ○ 사례경과

자사는 최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뉴룩스, 504-30-43599) 기업에서 법인사업자((주)뉴룩스, 530-86-03313) 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07년 개업하여 지난 17년여 동안의 경영 과정과 실적 등을 그대로 승계받기 위하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하고, 상호(주식회사만 추가), 대표자, 직원, 사업장을 동일하게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찰 수요기관에서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한 법인전환 후 용역, 물품구매 실적인정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완전히 다른 업체로 판단하여 실적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양수 전 회사의 사업실적도 법률적 권리 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사업양수도 시 실적이 승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설업 양도의 경우 건설업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건설업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시공 능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적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적이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디자인회사의 경우 실적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사업 포괄 양수도의 효력을 주장하여 실적이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타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07

지역  
대전

KEYWORD 용역계약

홍보물(브로슈어 및 에코백) 디자인 제작 의뢰에 따라 제작한 디자인 시안  
확인 이후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법적 다툼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는 oo기업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 2024년 7월 18일부터 브로슈어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동년 9월 6일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 중 수정을 포함해 4번의 피드백이 오갔으며,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었고, oo기업 담당자는 다음 주에 인쇄에 들어갈 것이라고 당사에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갑자기 취소 통보와 함께, 당사 팀장에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며 9월에 하려던 행사도 못하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청, 기자 등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문을 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둘 사이에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용역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금액은 추후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인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으며, 피드백을 통해 목적물이 완성되었으며, 이때까지도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은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금액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금감원이나 노동청은 관련 부서가 아니며, 특히 기사를 내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08

지역  
대전

KEYWORD 디자인 용역계약

3자 간 디자인 용역계약 진행 중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및 대처 방안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와 당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그리고 용역계약의 발주 업체의 3자 간의 문제에서 당사는 개발을 총괄하는 입장이었으나, 시제품 개발 및 납품 이후에 당사는 해당 개발 과정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에 실패한바, 이를 이유로 의뢰업체는 당사에 대해 설계 및 제작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당사에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던 제작비의 환수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의 지급 의무 및 이후의 대응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의뢰업체는 사기 고소를 위한 준비자료로서 입금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기업이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기업의 입장에서 제작업체를 사기로 고소하고 그것이 사기 고소의 중요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요청을 할 것이므로 신청기업이 해당 거래 자료를 의뢰업체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의뢰업체가 신청기업에 대해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500만 원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는 점은 신청기업이 해당 개발과정에서 탈퇴하기 전에 시제품이 이미 제작 완료되어 의뢰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신청기업이 해당 개발 과정에서 탈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기업과 의뢰업체 간의 계약 내용이 시제품의 설계, 제작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청기업은 의뢰업체와의 관계에서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 이행은 모두 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기업이 지급 받은 500만 원은 환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제품의 제작과 인도까지가 계약의 내용인데, 시제품이 의뢰업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신청기업이 채무 불이행의 상태에 있으므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요청금액 미지급 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신청기업과 의뢰업체의 계약의 문제는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뢰업체가 신청기업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도 보전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의뢰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업체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 디자인 작업 중 제공한 원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는 외주를 받아 3개월 정도 병원의 인쇄, 웹 디자인물을 담당했습니다. 당사는 초반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 계약서를 준다고는 했으나, 지속 회피하여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약 39건의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지속 원본 파일을 요구하여 계약서에 원본 제공 비용에 대한 처리가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본 파일을 미리 제공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원본 파일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현재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파일에 대해 당사가 저작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한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하면 2차 수정 변형이 불가한 사실을 알려도 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계약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게 디자인 작업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일의 개시에 있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물의 소유권 및 변형 금지 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에 의한 계약도 당연히 계약으로 성립하며,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의뢰인이 생각한 대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파일에 대한 금액 부분은 상호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디자인 저작물이 원본 파일의 제공을 내용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원본 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별도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주지 않을 것이기에 법적 분쟁이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디자인 제작물 자체의 소유권은 의뢰한 사람이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원본 파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변형 금지 등의 요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작물이 아닌 원본 파일의 사용과 관련해서 보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원본 파일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소유물이 의뢰인에게 있기에 사용 제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본 파일의 복제 등으로 이미 업체가 그 파일을 다른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추후 이 상황에 대해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 침해 이슈로 온라인 구매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저희는 디자인기업인데, OOOO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는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OOOO에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OOOO로부터 첨부된 저작권 계약서에 날인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구매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첨부된 계약서를 확인한 바, 신청인 기업이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한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및 기간 등과 동일하여 별도의 서식에 날인하였다는 점만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아가, 첨부된 계약서상 라이선스 구매 전 사용에 대하여 소급하여 정당한 라이선스 사용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며, 신청인이 현재 구매한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 의무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이며, 해당 건의 계약 내용의 경우, 대부분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으로 이 조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날인 유무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계약이 구두 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디자인용역

#### ○ 사례경과

상대방과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선입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계속된 수정을 요구하여 일부 수정비는 받았지만, 잔금 및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 또는 법적 조치 등은 무엇이 있는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있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잔금 또는 정산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반송될 것이므로,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주소 보정을 통하여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절차 등은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계약 건에 대한 용역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디자인용역

#### ○ 사례경과

OOO 리조트와의 디자인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용역비가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견적서에 포함된 브랜드 컨설팅 용역 이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쁘티 호텔'로 변경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내부 가구 선택, 스타일링, FFNE 등의 추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대가는 약 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현재 용역대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추가 용역비는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제가 대납한 도메인 등록 및 서버 비용에 대하여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등록비 등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용역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인과 상대방 간 체결된 용역계약은 용역의 내용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수행한 세부적인 업무 내역 및 그 용역의 일반적인 대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 또는 감정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메인 등록비 및 서버 비용의 경우 해당 도메인이 상대방의 홈페이지를 위하여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청구는 가능하나, 금액 대비 소송 진행을 위한 비용(금전적 지출과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신청인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공급한 BI 디자인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려 중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기지급받은 용역대금 이외에 추가로 용역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관계에 반하며, 오히려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13

지역  
서울

## KEYWORD 손해배상금액기준

디자인 용역을 맡겼지만, 용역 결과물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상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 ○ 해당분야

환경디자인

## ○ 사례경과

당사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디자인 용역에 대한 견적서 등을 제공받은 후 상대측에 디자인 용역을 맡겼고, 용역계약서에 날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최종 결과물 보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용역 결과물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데, 보상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이 경우, 디자인 용역계약 성립 여부 및 용역 대금 지급 기준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본 디자인 용역에 있어 용역 범위 및 용역 대금은 용역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확정적인 용역 범위와 용역 대금이 기재된 견적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이 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디자인 제작을 진행하도록 한 것을 설계 용역계약에 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디자인용역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신청인에 대해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에 따른 용역성과물에 대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의 용역 대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설령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날인된 용역계약서가 없더라도,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은 견적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디자인 용역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해 해지 시점까지의 디자인 용역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만약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확정적인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이니 요구에 따른 것이고,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은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으로 쌍방이 얻게 될 이익, 계약의 포기로 입게 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 손해액의 40~50%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위 손해액의 책임 제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책임 제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14

지역  
서울

## KEYWORD 디자인비 지급여부

요청한 취지에 맞지 않는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의뢰한 업체로부터 제가 요청한 취지에 맞지 않은 벽화 디자인 시안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시안이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경우 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인의 요구가 일정한 주제가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원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시안을 제출하였음에도 확인 결과 시안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음은 물론, 타인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요구사항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인 디자인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디자인(시안)에 대응한 디자인 비용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보전해 주는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는 측면이기도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서면화된 자료 없이 구두로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드러난 정도로 보면 소송 등 분쟁의 절차에서도 대가적인 디자인비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비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상대방의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유사한 사안에 적용하는 금액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상대가 그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등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으나, 전혀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15

지역  
서울

## KEYWORD 용역대금 청구가부

디자인 용역을 제안받아 의뢰인에게 1차 시안을 전달하였으나, 갑자기 다른 업체를 구했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현재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매칭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업체 제품 카탈로그에 들어갈 디자인 작업물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디자인 용역을 제안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의 디자인 작업 요청 사항이 세세한 점과 결재 확답에 의거하여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1차 시안을 전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구했다는 이메일만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이런 경우 먼저 디자인 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은 디자인 용역 대금이나 용역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상대방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월요일에 결재받고 결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본인이 최종 승인권자는 아니며, 별도로 결재를 받은 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결재를 받고 용역을 맡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더라면 상호 오해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결재를 받고 결제 진행하겠다”라고 하여 협의 단계에서 마치 결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월요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여 신청인이 오해를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다만, 담당자가 결재를 받아야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밝힌 만큼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확정적인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의 용역제공이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계약교섭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용역이 이행되었고, 이행 비용에 대한 계약교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인 입장에서 디자인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는 디자인 용역 대금 청구 위해 법원에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16

지역  
부산

## KEYWORD 대금 청구 및 지급명령

계약서 없이 요청한 디자인 작업에 대해, 업무 범위와 대가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작업 파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해당분야

용역비 계약

## ○ 사례경과

저는 올해 초 시각 디자인 사업을 창업한 후, 이전 직장 대표로부터 100만 원에 행사 홍보물 디자인을 의뢰받아 작업을 시작했으나,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행사 관련 디자인만 진행하고자 했으나, 상대는 화장품 라벨 디자인 등 추가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선입금도 없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한 후,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상대는 계약서 작성 없이 모든 디자인 파일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며, 상대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자문을 드립니다.

## ○ 자문의견

최초 유선상으로 업무 위탁을 해 교육청 행사 홍보물 디자인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 합치가 있었습니다. 고객(상대 대표)이 그에 대한 보수를 100만 원으로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승낙하여 업무 범위를 특정하여 대금 90만 원으로 표준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고객은 표준계약서 확인 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화장품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① 해당 업무는 표준계약서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② 신청인 또한 화장품 관련 업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재차 표시하였고, 그 후 고객이 화장품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위탁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 관련 업무는 디자인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송부 후 확인을 하였고, 그 후 세부 업무를 위탁하는 등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입니다. 대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3일이라고 했으나, 한 번 더 해당일에 대금 9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금을 받지 않더라도 디자인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문의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고 디자인과 파일등을 반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진행될 행사에서 고객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6

지역  
부산

## KEYWORD 대금 청구 및 지급명령

계약서 없이 요청한 디자인 작업에 대해, 업무 범위와 대가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작업 파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고객이 2024년 6월 12일 자 행사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용역의뢰를 승낙한 경우라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기존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90만 원을 넘는 배상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역업무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3일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한 번 더 청구하고(문자메시지 등), 이후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연 6%의 법정이자를 더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7

지역  
대구

## KEYWORD 용역비 지연에 따른 해결방안 문의

의류회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3개월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급여는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1개월 치의 급여에 대해 저의 디자인을 문제 삼아 입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 ○ 해당분야

용역비, 계약

## ○ 사례경과

현재 의류회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3개월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급여는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1개월 치의 급여에 대해 저의 디자인을 문제 삼아 입금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우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급,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시간, 사업주 지시 등이 있어야 하는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노동청을 통한 임금 지급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법원을 통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소액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 의뢰하기 전에 나 홀로 전자소송을 공부해서 제기하면 비용면에서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사업주 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8

지역  
광주

구두계약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고 패키지디자인을 진행하였으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방안도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패키지디자인, 정부지원사업

#### ○ 사례경과

구두계약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고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비록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 계약서는 없으나, 견적서와 시안의 전달, 10회를 넘는 수정 등의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과 당사자 사이 용역계약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상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

지역  
광주

디자인 용역 대금 미지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로고디자인, 간판디자인

#### ○ 사례경과

저희 업체는 2024년 7월 11일, A사로부터 A사와 아들 사업자인 B사의 로고 및 간판 제작 의뢰를 받아 현재 2024년 9월 4일까지 총 2차례 방문 실사 측정, 상담 및 디자인 시안 교체 및 수정 7회를 전달하였으나, 제작 단계에 이르러 제작 비용 삭감을 터무니없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초 견적 4,000천 원에서 3,200천 원으로 조정하고 간판 수를 줄이거나 조명을 비 조명으로 바꾸자고 제안해 보았지만, 상대는 2,000천 원이 아니면 진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으며 연락 또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디자인 로고 및 시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견적서에는 해당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디자인 로고 및 시안 제공에 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지(견적서에는 로고 및 시안뿐만 아니라 간판 제작을 전지로 4,000천 원이 기재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현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실조회를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가 아닌 소장을 작성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폰트라이선스 #폰트 저작권 #지식재산권 보호 #구매한  
폰트의 사용 범위



## 01

지역  
서울

## KEYWORD 폰트라이센스

현재 본사에서는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업하는 지사에서도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대표 2명이 동업을 하면서 현재 본사에서만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지사에서도 별도로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정확한 것은 본사에서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살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대체로 당해 법인 내지 회사에 한정하여 구매되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본사의 폰트 구매가 지사의 폰트 사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폰트를 지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법인의 대표가 동업을 한다는 점은 두 대표 사이의 문제이지 양 법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폰트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새로운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과거 사용 규모나 액수 등이 과도하지 않다면 폰트 저작권자가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02

지역  
부산

## KEYWORD 폰트 저작권

무료 폰트 사용 후 라이선스 구매 요구 시 대처 방법과 콘텐츠 내 폰트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노무

## ○ 사례경과

당사는 홍보 및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무료 폰트(글꼴) 사용 후 저작권법 위반으로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의 대처 법과 제작한 콘텐츠의 폰트들이 저작권에 위배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업체는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경우에 따라 무료 혹은 유료의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냥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폰트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폰트 자체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로고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의 로고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폰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발생되어 있는 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검색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속하면 저작권자 이름이나 저작권 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검색이 가능하지만, 무작위로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는 것은 현 시스템상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태생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저작권 검색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이후 70년이라는 긴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언제 침해에 대한 경고장이 전송되어 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무료든 아니든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 03

지역  
부산

## KEYWORD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보호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 이미지 도용 문제 대응,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디지털

## ○ 사례경과

주식회사 슈잉은 최근 개발한 SNS 기반 핫플레이스 추천 서비스 '슈잉'의 디자인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발생한 이미지 도용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파트너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용역비 계약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회사의 CI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창작된 도안(캐릭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표란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슈잉이라는 CI는 상표권등록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절하며 상표권은 '출원주의'이므로 근시일 내에 출원해 보호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 디자인 의뢰자가 계약금 등의 입금 전에 시안을 요청하여 시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뢰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디자인 시안을 보내셔야 합니다.

## 04

지역  
대구

## KEYWORD 구매한 폰트의 사용 범위

당사(진성기획)가 사용한 PDF 파일에 대하여 사용 허가 되지 않았으므로 E-book 사용권을 구입하라는 통보를 상대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사가 제한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당사는 e북 제작 업체가 아니라는 점과 요구 금액이 부당한 금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 사례경과

당사(진성기획)는 현진시스템이라는 업체로부터 당사가 사용한 PDF 파일에 대하여 사용 허가 되지 않았으므로 E-book 사용권(기간:1년)을 1백만 원(세액별도)에 구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사가 제한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무하다는 점, 2008년 패키지에는 사용 제한이 전혀 없었다는 점, 당사는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이지 e북 제작 업체가 아니라는 점, 현진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부당한 금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법에 대한 자문을 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사례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인쇄물인 "내남농협 소식지"를 납품한 것은 진성기획에서 구입한 아시아 폰트 패키지의 사용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남농협의 소식지"의 PDF 파일을 내남농협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행위가 아시아 폰트 패키지의 사용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아시아 폰트 설치용 CD 패키지의 설치 프로그램에 기재된 "사용권 계약"에 기재된 "사용 범위"의 해석을 통하여 위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남농협 소식지"의 납품 행위: 아시아 폰트 설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된 "사용권 계약"에는 "인쇄물(책,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등)"에 아시아 폰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시아 폰트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내남농협 소식지 PDF 파일" 업로드 행위: 아시아 폰트의 "사용권 계약"에는 사용 범위에 기재된 용도 이외에 "이북,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시아 폰트와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남농협 소식지 PDF 파일을 내남농협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행위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조합원들이 PDF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아시아 폰트의 사용권 계약에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진성기획)가 사용한 PDF 파일에 대하여 사용 허가 되지 않았으므로 E-book 사용권을 구입하라는 통보를 상대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사가 제한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당사는 e북 제작 업체가 아니라는 점과 요구 금액이 부당한 금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내남농협 소식지 PDF 파일이 e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e북은 "종이책 형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EX: PDF 파일)로 다운받아 PC, 스마트폰 등의 화면을 통하여 이용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내남농협 소식지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이를 다운받아서 PC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이므로 e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진성기획의 소식지 PDF 파일 업로드 행위는 아시아 폰트의 사용 범위를 넘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됨

3) 기타 진성기획의 주장 관련: 진성기획은 업로드한 소식지 PDF 파일을 내남농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한 횟수가 19회이고, 실질적 조회수는 10회 미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사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일어난 이상, 그 횟수의 적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 폰트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PDF 파일 업로드는 인쇄물 납품과 관련된 무료 서비스라 주장하나, 이 역시 유무료를 떠나 사용 범위를 넘어서 행위에 해당되어 적절한 항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성기획의 "내남농협 소식지 PDF 파일"의 내남농협 홈페이지 업로드 행위는 아시아 폰트와의 사용권 계약에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기재된 "e북,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에 해당되므로, 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진성기획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지극히 미미함과 인쇄물 이외에 선의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아시아 폰트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 노무 및 회계 관련

#수습기간 직원해고 #지사직원고용 #실업급여 #법인  
전환 절차 #법인 면세사업 운영 #수습(인턴)기간  
#외국회사근로자 #4대보험 #세금감면 #신입 디자이너  
노무



## 01

지역  
서울

## KEYWORD 수습기간 직원해고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 ○ 해당분야

기타디자인

## ○ 사례경과

태도 문제 등으로 수습 기간인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첫 번째 질문은 "수습 기간 내 수습해지는 고용 해고에 해당하는지?"라는 문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수습 기간 중의 해지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습 기간 내 연봉삭감이 가능한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수습 기간 중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매년 연봉 인상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답변은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연봉 인상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02

지역  
서울

## KEYWORD 지사직원고용

지사에서 직원 고용 시에는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 ○ 해당분야

기타디자인

## ○ 사례경과

지사 직원 고용 시에는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첫 번째 질문은 "지사에서 직원 고용 시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의 주체 및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본사와 지사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을 지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사 소속으로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사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산재 등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사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지사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이므로 임금 체불 등 인사 노무 리스크가 발생하면 지사 사용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본사에서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03

지역  
부산

## KEYWORD 실업급여

퇴사한 사내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내이사 신분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 ○ 해당분야

노무

## ○ 사례경과

당사에서는 사내이사로 있던 직원 한 명이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정리하고 주식 보유에 대해서 주식 가치평가를 받은 후 해당 지분만큼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관련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어서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관리공단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혹시 받게 해 줄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월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대체휴일을 사용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더 지급하면 되며,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근로자의 시급에 근로 시간을 곱해야 하는데, 시급은 월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 임금을 검토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상 검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이사의 실업급여 신청 문제에 있어 사내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내이사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식 보유가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기록, 결재내역, 지시와 복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동료 직원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는 무기근로계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을 고려해 무기계약을 체결하나, 채용 후 업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단기계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외근로 발생 시 수당 지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약정되어 있어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외근로가 예정된 경우 이를 반영해 월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시급과 수당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03

지역  
부산

## KEYWORD 실업급여

퇴사한 사내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내이사 신분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어 비과세 처리 가능한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식대 월 20만 원, 차량유지비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는 회사 내 식당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며, 차량유지비는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될 때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급 산정에 반영되며,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로 시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4

지역  
부산

## KEYWORD 법인 전환 절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현재 업체를 운영 중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귀사의 법인전환은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이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이 적합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lt;법인전환 절차&gt;

## (1) 법인설립 준비

- 1) 상호 결정: 부산 시내에서 같은 업종인 동일 상호는登記 불가함
- 2) 회사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구비
- 3) 자본금: 자본금의 최저 금액 제한 규정은 없으며,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 4) 임원 구성: 대표이사 1인 회사 설립 가능(이사와 감사 추가登記 가능)
- 5) 정관 작성: 표준 정관 사용

## (2) 법인설립등기

법인 설립 서류가 준비되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 등기신청 후 2~3일 후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 (3)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 가입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

## (4) 법인예금 통장 등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예금통장과 임직원의 4대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진행

## &lt;법인전환의 세제 혜택&gt;

- (1) 법인세는 소득금액이 2억 원 이하일 때 9%가 적용되어 개인기업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
- (2)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됨

## 05

지역  
부산

## KEYWORD 법인 면세사업 운영

교육서비스업의 신규 법인에 적합한 세무 및 회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해당분야

제품

## ○ 사례경과

당사는 보드게임 제작 및 판매 업무 외 교육서비스업을 주 사업 내용으로 올해 신규  
설립하였으며,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불편 사항으로 인해 학교  
및 기관과의 계약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단순 교육서비스  
제공은 면세 항목으로 진행 중에 있어 학교나 기관과의 계약 변경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사는 별도로 세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대표자인 본인이 직접 일을 수행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항목별 과세, 면세 사업자 승인 또는 기타 사업 내용에 맞는  
세무 및 회계 방법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법인의 면세사업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며,  
면세사업만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면세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면세 법인사업자라는 개념이 없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 과세와 면세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서 발행 및 원천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교육 서비스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교육  
강사에게 강사로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여 지급합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에 있어서 면세사업만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발행한 계산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 세액공제는 불가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이 없습니다. 아울러  
원천 징수한 강사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간이 지급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06

지역  
광주

KEYWORD 수습(인턴)기간

## 신규인력 채용관련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급여 체계에 대한 자문의뢰

## ○ 해당분야

노무, 임금

## ○ 사례경과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기간 설정 및 인턴 기간 동안의 급여 체계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인턴이라는 것은 정식 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 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에서 수습 계약 내용을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사항은 아래의 관련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07

지역  
광주

KEYWORD 외국회사근로자

## 외국회사 근로에 따른 재택근무자로서 임금 관련 전반적인 자문 요청

## ○ 해당분야

노무

## ○ 사례경과

2023년 12월 1일부로 홍콩 에이전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되어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임금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로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보험에 관해서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한국에서 홍콩달러로 월급을 받으면서 처리해야 할 각종 세금이나 보험에 대해 문의가 있으며, 소득신고부터 의무로 납부해야 할 세금 비율이나 처리 방법, 재택근무자로서 해당되는 보험 여부 등 임금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문을 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인은 외국에 있는 외국회사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현재 검토할 것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입니다. 외국회사에서 급여 등이 결정되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에 소속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을종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08

지역  
대전

## KEYWORD 4대보험

공동 대표에서 사내이사로 보직 변경 시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형태에 대한 문의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 사례경과

현재 당사는 각자 대표 체제로 2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되면서 사내이사로 보직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타 기관에서 겸직하고 있어 대표에서 이사로 보직 변경을 하게 되면 직원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중복 가입이 되고 복잡해질 것 같아 현재 각자 대표에서 수령하고 있는 급여를 자문료의 형태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자문료의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4대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현재 신청자는 월 50만 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실제 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기의 경우 ①월 60시간만 근로자로 신고하여 4대 보험을 제외할 수도 있으며, ②자문료 형태로 지급하여 3.3퍼센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의 겸직 허가 조건이 직원 신분인 경우라면 월 60시간 미만 근로로 신고하여 4대 보험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09

지역  
강원

## KEYWORD 세금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후 국세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세무회계

## ○ 사례경과

저는 춘천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로, 행사 기자재를 디자인 및 제작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구체적인 업종은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49907)과 그 외 기타 나무 제품 제조업(202905)입니다. 이 경우 주업종 및 부업종 관련하여 절세나 정부 지원 사업 혜택에 유리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신청자가 문의한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은 한국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11호 나목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서면 질의한 내용대로 전시회 등에 사용되는 행사 기자재를 제작하여 단순 임대하여 주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종의 분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한국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면 상담 결과, 신청자의 서면질의 내용과는 달리 감면 대상 업종인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한국통계청에 해당 업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신입 디자이너의 연봉 책정 기준 / 법정 보장 연차 / 근로계약 시 주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디자이너 노무

#### ○ 사례경과

신입 디자이너의 연봉 책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와 평균적인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는 얼마나 되는지, 근로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신입 디자이너의 급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의 임금(연봉)은 각 회사의 규모, 매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주 40시간 기준 최저 연봉은 25,155,240원입니다. 해당 연봉액은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본급 기준의 연봉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연봉액 이상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음으로 법정 보장 연차에 관련해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1월 1일~11월 30일까지 만근(개근) 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1년이 된 경우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는 주 40시간 기준 1일 8시간 기준이 되며, 만약 주 20시간 근무라면 1일 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끝으로 근로계약 시의 유의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법, 지급법,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채용 이후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 또는 개시 이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노사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프리랜서계약 #기업갑질 대응 #초상권 침해 #저작권법  
문의 #사문서위조 #디자인출원 #저작권 #손해배상



## 01

지역  
서울

## KEYWORD 프리랜서계약

프리랜서로 계약 진행 시 법적 리스크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제품 디자인

## ○ 사례경과

저희 회사의 경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수주될 때마다 프리랜서 등 계약자와 프로젝트 계약 등을 통하여 수주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리스크와 표준 계약서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프리랜서 종사자 등과의 일시적 근로 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두드러진 법적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칫 프리랜서 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곤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 '근무', '근로자', '근로계약' 등의 용어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단기간의 일시적이고 특별한 용역계약 과정의 계약임을 명백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이 아닌 특별한 용역계약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업무 장소, 업무시간, 업무 내용,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층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 02

지역  
서울

## KEYWORD 기업갑질 대응

수혜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 해당분야

제품 디자인

## ○ 사례경과

현재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기업의 디자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수혜기업이 일방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저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사업비를 환수 조치당할 수도 있어 매우 부담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수혜기업의 무리한 요구 혹은 무례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볼 때, 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행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혜기업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혜기업의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신청인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상대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수혜기업 담당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혜기업 담당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환수 조치의 경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든지, 또는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어서 상대방 수혜기업의 갑질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되었다면, 사업비의 환수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03

지역  
대구

## KEYWORD 초상권 침해

사진 배경에 찍힌 사람들의 별도 동의 없이 블러 처리 후 작업물에 사용해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 ○ 해당분야

기타 : 초상권

## ○ 사례경과

사진 배경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 없이 흐리게 블러 처리 후 작업물에 사용해도 초상권에 침해가 되는지요?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인데,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통상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 공표 등이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당사자의 허가 없이 초상을 촬영, 공표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문의한 사안과 같이 사진 배경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블러 처리하더라도 의복, 신체적 특징 등을 통하여 특정인임이 식별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피하려면 사진 배경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확실한 모자이크 처리와 더불어 복장 등을 통해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04

지역  
대구

## KEYWORD 저작권법 문의

동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익 창출이 생기는 시점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편집자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분야

기타 : 온라인 편집자로서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

## ○ 사례경과

현재 취미로 동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익 창출이 생기는 시점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편집자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자문의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자료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승낙을 받은 후에 이를 편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 매체를 전부 인용하지 않고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패스트무비' 사건 같은 경우 전체 영화를 10분으로 압축하여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이나 이를 영화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방영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 풍광을 촬영하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등 업로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타인의 만든 영상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타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05

지역  
광주

## KEYWORD 사문서위조

상대방을 저작권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은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 ○ 해당분야

저작권위반

## ○ 사례경과

상대방(○○○대표)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 참여 지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특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저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제 동의 없이 저작권 등록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제 서명을 도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은 저와의 고용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먼저, 상대방 주장의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이유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용자인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서명 활용에 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도 않고,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내역도 실비에 불과할 뿐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위 경찰조사 이후 편법으로 고용 노동청, 국세청 등에 인건비 지출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나 관계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을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의 상대방 주장은 이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명 사용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보완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신청인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자신이 기획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반박 자료를 미리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06

지역  
대전

## KEYWORD 디자인출원

고객 의뢰물 또는 초상화 일러스트 등 작업 결과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다음의 두 가지 내용에 관해 자문드립니다.

첫째, 고객의뢰로 일러스트 작업한 결과물(예: 햄버거 그림)을 디자이너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둘째, 초상화 일러스트 작업 결과물(드로잉 작업으로서 실사 초상화와는 다름. 캐릭터화)을 디자이너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 자문의견

우선적으로 고객과 디자이너 간의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천적으로 발생하게 되나, 계약과 함께 저작권을 양도,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해석될 수 있다면 저작권이 고객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수급인이 다른 용도,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원천적으로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관계상 저작권을 일러스트의 대상자인 인물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다른 용도, 특히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인물 일러스트는 개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유명인이나 특별한 경우의 일반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물 일러스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초상화 일러스트 대상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초 계약 시 상업적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개발했던 디자인을 개인기업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나요?

####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 사례경과

과거,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던 법인기업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본인의 개인기업에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드립니다.

#### ○ 자문의견

본 사안의 디자인들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시 근무하던 디자이너가 독립하여 기존의 디자인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자 할 때, 만약 허락을 득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 결과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의 사용이 상업적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인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 case by case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디자인 결과물을 단순히 자신의 이력을 알리거나, 경력을 알리거나, 또는 취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영업, 광고 및 판매 행위까지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상기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전 회사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득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샘플과 본품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 중 업체가 의뢰업체와 상의 없이 본품을 먼저 제작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기타(출판)

#### ○ 사례경과

당사는 제작업체에게 당사의 북커버 샘플과 본품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업계 상식상 샘플 제작 및 검수 이후 샘플 수정과 제작 의뢰업체의 요청을 받고 본품을 제작하여야 하지만, 제작업체 측에서는 임의로 샘플과 본품을 동시에 제작한 상황입니다. 샘플 수정 사항도 많고, 제작한 물건에 인쇄 누락 등의 하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업체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작업체에서 임의로 제작한 물건에 제작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제품 제작을 위해 제작업체에 사입하여 전달한 원단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문을 드립니다.

#### ○ 자문의견

일단, 두 회사 간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고, 서로 간에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적으므로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업체 입장에서는 샘플에 대한 검토 후에 본품을 제작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작업체에서도 본품 제작을 위한 샘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샘플에 대한 확인이나 수정 여부 확인 없이 본품을 제작한 제작업체의 행위는 정당한 계약이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제작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어 승소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의뢰업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샘플 제작과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뢰업체에서 제작업체에 공급한 원단은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찾아보기



|    |                                                                                                                                                                                                                                                                                      |    |
|----|--------------------------------------------------------------------------------------------------------------------------------------------------------------------------------------------------------------------------------------------------------------------------------------|----|
| 01 |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요청받고 작업까지 완료하여 상표등록을 요청드렸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후 다른 업체가 제 디자인을 도용하였고, 이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18 |
| 02 | 특정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다른 용도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 19 |
| 03 | 국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유사하게 모방한 작품을 SNS나 취업용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20 |
| 04 | 지자체와 계약 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21 |
| 05 | 진단 계측이 가능한 진공 청소 차량용 보조엔진을 위한 구동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동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23 |
| 06 | '누구나'와 'NOOGOONA' 상표를 상표법 거절 사유를 해결하여 등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 24 |
| 07 | 주 4일제 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주의 출근일 조정 및 총액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 26 |
| 08 | 브랜드 네임으로만 상표권을 확보한 후 심볼과 병기된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27 |
| 09 |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8 |
| 10 |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제3자가 2020년도에 상표권등록 했는데 상표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29 |
| 11 | 개발한 제품의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1 |
| 12 | 자사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33 |
| 13 | 경쟁업체에서 신규로 상세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당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35 |
| 14 | 지역 문화재에도 저작권 같은 것이 있나요? 이미 문화재를 본뜬 디자인이나 제품이 많은데, 이러한 디자인 등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6 |
| 15 | 직물지를 출원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직물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나 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에 대한 등록 무효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37 |
| 16 | 당사는 현재 판촉물 쇼핑물과 장류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및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품목에 관해 '오름기프트'라는 브랜드로 로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해 궁금합니다.<br>1. 지식재산권에 심사를 받아야 지식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br>2. 인터넷 검색 시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판매하면 표절 시비가 붙을 수 있나요?<br>3. 브랜드 로고의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거나 이름이 비슷하게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 38 |

|    |                                                                                                                                  |    |
|----|----------------------------------------------------------------------------------------------------------------------------------|----|
| 17 | 당사는 시각 전문 디자인 기업으로, 현재 보유 중인 회사 브랜드명 상표등록(제40-1656699호) 외 추가로 필요한 지정 상품, 현재 개발 중인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 및 상표의 해외 출원 등에 대한 자문을 드립니다.   | 39 |
| 18 | 당사는 현재 버섯 및 기타 시설작물 재배 및 작물 재배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고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내 상표등록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 40 |
| 19 | 당사는 '왕만 양꼬치'라는 명칭으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사 명칭의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상기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 41 |
| 20 | 현재 판촉물 쇼핑물과 장류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및 도소매 사업중으로 해당 회사의 네이밍으로 상표권 확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국내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와 상품 판매와 관련된 지정 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 42 |
| 21 | 경쟁업체에서 당사의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 상세페이지에 등록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 43 |
| 22 | 세계 랜드마크 '아트웍' 저작권 침해 여부                                                                                                          | 44 |
| 23 | 상대가 작년 체결한 홍보물 제작 계약에 의해 제공한 홍보물 디자인을 올해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조치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 45 |
| 24 | 자체 제작한 e-book에 사용된 ▲▲폰트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위반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46 |
| 25 | ***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그 상품명과 '100% 정품'이라는 표시를 하였는데,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 47 |
| 26 | 디자인회사가 고객이 의뢰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자체 출원 할 수 있나요?                                                                                          | 48 |
| 27 |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 방안이 궁금합니다.                                                                                                 | 49 |
| 28 | 조립식 가구 등 디자인 개발에 따른 디자인권 및 상표권 권리가 궁금합니다                                                                                         | 50 |
| 29 | 아이디어 제품 개발 건에 대한 특허출원과 디자인 출원 및 전략적 활용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51 |
| 30 |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52 |
| 31 |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국외 디자인 방어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53 |
| 32 | 대전지역의 주요 건축물을 활용한 굿즈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까요?                                                                              | 54 |
| 33 | 제품 홍보 과정에서 동일한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을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소명하여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55 |
| 34 | 제품디자인 개발 확정안에 대한 출원 가능성 등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요청                                                                                | 56 |
| 35 | 미국 바이어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등록을 미국에서 진행하였을 경우, 별도의 지급 없이 상표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나요?                                                          | 57 |
| 36 | 디자인 개발이 기업의 특허권 행사에 제약이 되나요?                                                                                                     | 58 |

|    |                                                             |    |
|----|-------------------------------------------------------------|----|
| 37 | 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품개발 중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의 디자인 출원 가능 여부 | 59 |
| 38 | 디자인 특허출원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을 자회사의 다른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 60 |
| 39 | 개발된 디자인 시안에 대한 디자인 출원 가능성 검토 요청                             | 62 |
| 40 | 예비 창업한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출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63 |
| 41 | 국내외 상표 보호 조치 및 취약점이 궁금합니다.                                  | 64 |
| 42 | 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사용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65 |
| 43 | 전공 수업 결과물을 공모전에 출품 시, 권리 귀속 및 권리보호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66 |
| 44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할 경우, 디자인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67 |
| 45 | IPP(일학습병형제)를 통해 근무 중인 회사에서 참여한 작업물의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68 |
| 46 | 포트폴리오 등 개인 작업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도용 방지 방안이 궁금합니다.                | 69 |
| 47 |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한가요?                          | 70 |
| 48 |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2차 가공물에 대한 디자인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71 |
| 49 | 모바일 앱의 UX/UI에 대한 디자인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72 |
| 50 | 해외(중국, 일본)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73 |

|    |                                                                                                                                                                                                        |    |
|----|--------------------------------------------------------------------------------------------------------------------------------------------------------------------------------------------------------|----|
| 01 | 용역계약 체결 이후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 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76 |
| 02 |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77 |
| 03 |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 78 |
| 04 | 서비스 보호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 이미지 도용 문제 대응,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79 |
| 05 | 지식재산권 침해 및 계약 위반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80 |
| 06 | 자사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기업에서 법인사업자 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입찰 수요기관에서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한 법인전환 후 용역, 물품구매 실적인정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양도기업과 양수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로 판단하여 실적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81 |
| 07 | 홍보물(브로슈어 및 에코백) 디자인 제작 의뢰에 따라 제작한 디자인 시안 확인 이후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법적 다툼                                                                                                                                       | 82 |
| 08 | 3자 간 디자인 용역계약 진행 중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및 대처 방안                                                                                                                                                                | 83 |
| 09 | 계약서 미작성 디자인 작업 중 제공한 원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84 |
| 10 | 저작권 침해 이슈로 온라인 구매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 85 |
| 11 | 디자인 계약이 구두 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86 |
| 12 | 계약서 미작성 계약 건에 대한 용역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87 |
| 13 | 디자인 용역을 맡겼지만, 용역 결과물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상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 88 |
| 14 | 요청한 취지에 맞지 않는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89 |
| 15 | 디자인 용역을 제안받아 의뢰인에게 1차 시안을 전달하였으나, 갑자기 다른 업체를 구했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90 |
| 16 | 계약서 없이 요청한 디자인 작업에 대해, 업무 범위와 대가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작업 파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91 |
| 17 | 의료회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3개월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급여는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1개월 치의 급여에 대해 저의 디자인을 문제 삼아 입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 93 |
| 18 | 구두계약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고 패키지디자인을 진행하였으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방안도 궁금합니다.                                                                                                      | 94 |
| 19 | 디자인 용역 대금 미지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 95 |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    |                                                                                                                                                                        |     |
|----|------------------------------------------------------------------------------------------------------------------------------------------------------------------------|-----|
| 01 | 현재 본사에서는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업하는 지사에서도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나요?                                                                                                        | 98  |
| 02 | 무료 폰트 사용 후 라이선스 구매 요구 시 대처 방법과 콘텐츠 내 폰트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99  |
| 03 | 서비스 보호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 이미지 도용 문제 대응,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100 |
| 04 | 당사(진성기획)가 사용한 PDF 파일에 대하여 사용 허가 되지 않았으므로 E-book 사용권을 구입하라는 통보를 상대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사가 제한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당사는 e북 제작 업체가 아니라는 점과 요구 금액이 부당한 금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101 |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 노무 및 회계 관련

- |    |                                                                                  |     |
|----|----------------------------------------------------------------------------------|-----|
| 01 |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 106 |
| 02 | 지사에서 직원 고용 시에는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 107 |
| 03 | 퇴사한 사내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내이사 신분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 108 |
| 04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110 |
| 05 | 교육서비스업의 신규 법인에 적합한 세무 및 회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11 |
| 06 | 신규인력 채용관련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급여 체계에 대한 자문의뢰                                             | 112 |
| 07 | 외국회사 근로에 따른 재택근무자로서 임금 관련 전반적인 자문 요청                                             | 113 |
| 08 | 공동 대표에서 사내이사로 보직 변경 시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형태에 대한 문의                                 | 114 |
| 09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후 국세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115 |
| 10 | 신입 디자이너의 연봉 책정 기준 / 법정 보장 연차 / 근로계약 시 주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 116 |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 |    |                                                                                                    |     |
|----|----------------------------------------------------------------------------------------------------|-----|
| 01 | 프리랜서로 계약 진행 시 법적 리스크에는 무엇이 있나요?                                                                    | 120 |
| 02 | 수혜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121 |
| 03 | 사진 배경에 찍힌 사람들의 별도 동의 없이 불러 처리 후 작업물에 사용해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 122 |
| 04 | 동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익 창출이 생기는 시점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편집자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23 |
| 05 | 상대방을 저작권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은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 124 |
| 06 | 고객 의뢰물 또는 초상화 일러스트 등 작업 결과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 125 |
| 07 |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개발했던 디자인을 개인기업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나요?                                                      | 126 |
| 08 | 샘플과 본품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 중 업체가 의뢰업체와 상의 없이 본품을 먼저 제작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 127 |

##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2, 2234(소관부서: 산업육성실)

웹사이트



[www.kidp.or.kr](http://www.kidp.or.kr)



[drights.kidp.or.kr](http://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IDP All rights reserved